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586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5. 9. 11.

판결 선고 2015. 10. 7.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2086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하천 16,46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9,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8㎡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C 하천 16,467㎡는 1995. 10. 27.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소하천구역이다.

나. D은 1998. 7.경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03. 6. 30. 과거5년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1,183,580원을 납부하고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측량하여 특정한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8, 7, 19,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및 (가)부분 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주거용), 점용기간: 2003. 6. 30.부터 2007. 12. 31.까지'인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 30. D으로부터 건물 기증에 따른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2. 21.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목적: 주거용, 점용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소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7년부터 의정부시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7, 6, 5, 4, 3, 2, 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Γ부분 128㎡(이하 "그부분"이라고 한다) 및(가)부분 128㎡(이하 "(가)부분"이라고 한다) 합계 256㎡(이하 총칭하여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면서 Γ부분에는 건축물을 축조하고, (가)부분에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축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가)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가)부분은 원래 피고가 먼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D이 피고 모르게임의로 측량을 하여 (가)부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점용허가 대상에서 (가)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던 D과 그 승계인인 피고가 뒤늦게 이를 부정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진술서)의 기재는 그 작성자인 D이 다시 진술서 취하서(갑 제12호증)를 작성·제출하여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피고가 1998. 7. 이전부터 (가)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소하천구역 관련 점용허가를 받지않았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국가로부터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용권을 부여 받은 원고에 대하여 그 점유를 주장할 수도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에 신축 내지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로부터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을 허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점유 부분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소하천구역에 속한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점유 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측량감정 및 보완감정측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 290㎡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62㎡를 제외한 나머지 (가)부분 128㎡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범석, 판사 유경진, 판사 강완수

[별지 3]

감 정 도



